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46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투자유치로 고도기술의 도내기업 이전과 지역의 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 취득과
-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등 소방행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심교통난 해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 동부소방서의 이전,
 - 진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증축하고
- 목재 제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위치한 생태체험관과 산림박물관과 연계, 목재제품종합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각리 18블럭
- 단지규모 : 330,580㎡(100,026평)
- 사업기간 : 2004. 1~12
- 사업비 : 48,378백만원
 - 국비(80%) 38,702백만원(264,464㎡)
 - 도비(20%) 9,675백만원(66,116㎡)
- ※ 330,580㎡중 20%인 66,116㎡를 자본으로 취득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4-1외 2필지
- 사업규모 : 224,254.2㎡(67,854평)
- 사업기간 : 2004~2008(5년간)
- 사업비 : 17,000백만원(도비 17,000)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개요

- 총 규모 : 부지 68천평, 건물 19천평/9동
- 사업비 : 235,500,000천원(전액국비)
- 사업기간 : 2004~2013(10년간)
- 사업내용 : 3개분야 9개사업
 - 인프라구축사업(BT,NT 연구장비) - 3개사업(5,500평)
 - 장비개발사업(NMR개발 등) - 3개사업(5,500평)
 - 지원사업 분야(첨단과학체험동 등) - 3개사업(8,000평)

◀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53의 3필지
- 현 청주동부소방서 용암파출소 부지
- 사업규모
 - 부 지 : 6,255㎡(1,893평)
 - 건 물 : 4,950㎡(1,497평) -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4~2005(2년간)
- 사 업 비 : 4,978,500천원(도비 4,978,500)

◀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 ▶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6-16의 1필지
- 현 진천소방파출소 부지
- 사업규모 : 2,307㎡(698평)
 - 부 지 : 4,682㎡(1,417평)
 - 건 물 : 2,307㎡(698평) - 증축(수직(2→3층),수평)
※ 기 존 : 2층 1,026㎡(310평)
- 사업기간 : 2004. 1~12
- 사 업 비 : 1,989,300천원(도비 1,989,300)

◀ 목재제품종합전시장(Wood-Land) 건립 ▶

- 위 치 : 청원군 마원면 미원리 산 1-3
- 사업규모 : 부지 5ha(15,129평) 건물 1,983㎡(600평)
- 사업기간 : 2004~2006(3년간)
 - 2004년도 : 실시설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 2005년도 : 전시관 등 종합전시장 신축
 - 2006년도 : 조형물 등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
- 사 업 비 : 6,314백만원(국비 3,157 도비 3,157)
 - 설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 1,114백만원
 - 목재종합전시관 등 신축 : 3,500백만원
 - 조형물 등 야외시설 및 전시물 : 1,700백만원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 고
계	39,957,800 (도비 36,799,600)				
오창제2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	9,676,000 (도비 9,676,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 매입	17,000,000 (도비 17,000,000)				
창주동부소방서 이전 청사 신축	4,978,500 (도비 4,978,500)				
전천소방서 청사 증축	1,989,300 (도비 1,989,300)				
목재제품종합전시장 (Wood-Land) 건립	6,314,000 (도비 3,157,000)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증감)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290,370.2㎡ (87,859평)	26,676,000			2	290,370.2㎡ (87,859평)	26,676,000
		건물	3	9,240㎡ (2,795평)	10,467,800			3	9,240㎡ (2,795평)	10,467,800
		기타								
	매입	토지	2	290,370.2㎡ (87,859평)	26,676,000			2	290,370.2㎡ (87,859평)	26,676,000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3	9,240㎡ (2,795평)	10,467,800			3	9,240㎡ (2,795평)	10,467,8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2·건	230,302㎡ (67,857평)	26,676,000				
	건물	3 건	9,240㎡ (2,755평)	10,467,800				
	기타							
1	토지	청원 오정 각리 18동리	66,116㎡ (20,005평)	9,676,000	2004	오정 제2외국인 기업지원단지 부지	한국토지공사	
	건물							
	기타							
2	토지	청원 오정 양정 804-1외 2필지	24,254㎡ (67,854평)	17,000,000	2004 ~ 2008	한국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오정센터 부지	한국토지공사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청주 상당 영운 153-7	4,960㎡ (1,497평)	4,978,000	2004 ~ 2005	청주동부소생서 청사 이전	신 속	
	기타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4	토지							
	건물	진천 진천 정관 6-16외 1필지	2,317㎡ (688평)	1,989,300	2004	신원진천양서 청 사	중 축	
	기타							
5	토지							
	건물	청원 미원 미원 산1-3	1,983㎡ (600평)	3,500,000	2004 ~ 2006	목재제품종합 전시장 건설	신 축	세부적인 사업규모는 실시설계 이후 확정 예정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목재제품종합전시장(Wood-Land)의 기반시설 및 조형물 등 사업비 2,814백만원은 미계상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계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계 정 법	지 방 계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대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인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